



정의의 종

Vol. 21 2011. 5.

발행인: 정중섭 | 편집인: 한기정

151-743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산 56-1

Tel: 02-880-6866 |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2011학년도 법학대학원 입학식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입학식이 지난 2월 28일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 산홀에서 거행되었다. 이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150여명의 법학대학원 신입생들은 예비법조인으로써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 2 page

해외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

우리대학은 네덜란드 Maastricht University 법대와 2월 16일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Maastricht University는 네덜란드 소재의 학교로, 이번 협정을 통해 학생 매년 2명의 교환학생이 선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와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지난 2005년에 체결했던 협정을 갱신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현재 독일과 미국, 일본, 중국 등 9개 나라 16개 대학(일반 학술협정 제외)과 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인사이드

1월 1일자로 남효순 교수가 법학연구소장을 맡게 되었으며, 3월 1일자로 姜光武 교수가 신규 임용 되었다.



남효순 법학연구소장



姜光武 교수

Contents

- 2-4 법대·법학대학원 소식
- 4-5 센터별소식
- 6-8 2011학년도 법학대학원 기념강연
- 9 공개강좌
- 10-11 교수동정 / 신간소개
- 12 발전기금 / 법과대학 및 센터별임정

법대 · 법학대학원 소식

2011학년도 법학대학원 입학식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입학식이 지난 2월 28일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종섭 법학대학원장, 김경한 법대동창회장 등 40여명의 내·외빈과 신입생들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전종익 기획부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학사보고, 그리고 정종섭 원장의 내·외빈 소개 및 식사로 이어졌다.

정종섭 법학대학원장은 식사에서 “관객의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울 법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입학의 의미”라는 말로 식사를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 법학대학원의 교육목표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임을 상기시킨 뒤 “법학대학원에서 기존 학부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며 법학을 3년 동안 만족스럽게 공부할 하기 위해서는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생활해야 한다.”라고 신입생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리고 “자만이 아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식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김경한 법대동창회장의 기념강연이 이어졌다. 김경한 동창회장은 “다양한 전공 분야를 마친 기본 위에서 다양하고 성숙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하여 화두를 꺼낸 뒤 로스쿨 시대에 있어 법률가의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과 이에 대비해야 하는 입학생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신념과 용기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닌 훌륭한 법률가 상”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러한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해 나갈 것”을 입학생들에게 당부하며 기념강연을 마쳤다.

이번 입학식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은 1, 2, 3기를 아우르는 450명의 3학년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예비법대가 양성요람으로써 기틀을 완비하게 되었다.

‘월송(月松) 유기천의 법학세계’ 특별기획전



서울법대 역사관에서는 4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학문과 실천으로 보범을 보여준 유기천 선생의 자취를 되돌아보는 ‘월송(月松) 유기천의 법학세계’ 특별기획전을 가진다.

유기천 교수는 해방직후인 지난 1946년부터 1971년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형법학’과 ‘한국형법’ 등 10여권의 저서와 400여편의 논문을 남기 한국 형법학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제9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2010학년도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



2010학년도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월 25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식장에는 정종섭 법대학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졸업생, 학부모 및 친지 등 수많은 내·외빈들이 팔 디딜 틈 없이 참석하여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정종섭 법대학장은 졸업식사에서 먼저 “졸업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축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신 교수님들과 뒤에서 애써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축하를 드린다”고 감사와 축하를 전하였다. 이어 “지금까지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 서울법대가 길러낸 많은 인재들이 기여해 왔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은 것이 서울법대의 역사”였음을 언급하며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배워 익힌 실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미래와 역사를 만들어 줄 것”을 졸업생들에게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임을 잊지 말 것”을 졸업생들에게 당부하며 졸업식사를 마쳤다.

김경한 법대동창회장 또한 졸업생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축하로 식사를 시작하였다. 김경한 동창회장은 “법이 사회생활의 잣대가 되듯 법학도는 사회의 리더로서 타인에게 수법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률과 지식만은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으며, 신념을 함께 갖추어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자신이 누리는 혜택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후배 여러분들을 동창회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고 반갑게 생각한다”며 새로이 동문인 된 졸업생들을 환영하였다.

이어서 대학원졸업생 대표 차민식 졸업생과 학부졸업생 대표 최과라 졸업생이 졸업인사를 하였고, 자리에 참석한 많은 내·외빈들은 열렬한 박수로 이에 화답하며 졸업생들의 앞길을 축하해 주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법학박사 13명, 법학전문박사 2명, 법학석사 37명, 법학학사 219명 등 총 27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송연창 졸업생이 학사과정 최우수졸업생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 외에도 최우등졸업생 20명과 우등졸업생 71명을 대표하여 각각 최승훈, 정의석 졸업생이 상을 수여받았다.

이상면 교수 정년식



지난 2월 28일 문화관 증강당에서 법과대학 이상면 교수(국제법)의 정년식이 있었다. 이날 정년식은 이상면 교수 및 서울대 각 단과대학의 정년을 맞은 교수 23명에 대해서 함께 개최된 것으로 각 교수들의 약력소개와 훈장, 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이 함께 열렸으며, 이상면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공로패 및 기념품의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에 퇴임한 이상면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과를 나온 후 1984년에 법과대학에 조교수로 취임하여 오년까지 30여년간 봉직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중국 대만 양안관계가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 중일어업협정 상 소위 ‘남,서 협정수역’의 법적 성격 등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관한 단수가 있다.

이동홍 헌법재판관 초청강연



지난 3월 22일 우리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의 연사로는 이동홍 헌법재판관이 초청되었으며,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주제로 1시간여의 열띤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동홍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과거 미국 Georgetown 대학에서 유학 당시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가 모교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자신 역시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이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이어 저서인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동홍 헌법재판관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의 강연과 대담에 관한 기억들을 술회하며 선진국의 재판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앞으로의 발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이동홍 헌법재판관은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리를 가득 메운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실력을 쌓음에 매진해야 할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의 도전이 필요함을 당부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서울법대 초청강연에는 100여명의 우리대학교 법과대학 학부생과 법학대학원생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뒤에도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도선사협회 장학금 전달식



3월 31일, 한국도선사협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동 2층 회의실에서 송정규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교수,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김준규, 남소정 학생, 2학년 김지연, 전상용 학생, 1학년 정문정, 이종혁 학생이다.

송정규 협회장은 장학생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학생으로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법가를로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할 것이

지만 이론적 지식에 앞서 윤리 의식 등 법조인이 가져야할 덕목을 갖추기를 부탁하였다.

이에 정중심 원장은 우수한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장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후배 법조인들에게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센터별소식

제1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에비연구자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월 17일 법과대학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서울대 법학 신진에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학문 후속세대의 지원과 양성을 목적으로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생들이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그 준비과정에서 이미 달성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박사과정 수료생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6회 하와이 컨퍼런스



지난 2월 21일 하와이 하얏트 호텔에서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와 버클리 기술과법센터 주최의 '제6회 하와이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법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버클리대, 워싱턴대,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발표를 하였다. 토론에는 KT, SKT,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제1회 모의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대한상사중재원, (사)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제1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가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법학 전공 학생들에게 국제상사중재 절차 및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국제상사중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전국의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 법전공자 또는 사법연수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구술변론에 참가한 31개

팀을 대상으로, 19일 32강전을 시작으로 16강전, 8강전을 거쳐 20일 준결승과 결승이 펼쳐졌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Quartet팀이 우승을 거두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해서 해외 Vis Moot Competition에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제2회 에너지법·정책포럼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POSCO의 후원으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제주신라호텔에서 에너지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26일 포럼 1부에서는 황진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상무, 김우영 성균관대 교수,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강남훈 지식경제부 국장이 '에너지법정책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윤종수 환경부 실장,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27일 포럼 3부에서는 이경훈 POSCO 전무,

김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황형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기후변화대응법제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조홍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가 에너지 분야에 제기하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건설법센터 개설

지난 1월 17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가 본부 승인을 받아 개설되었다. 건설법센터는 김홍보 교수를 센터장으로 하여 건축, 도시계획, 건설소송, 재건축·재개발, 주택, 하자담보 등 건설법 분야의 법과 제도의 개선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을 센터 설립과 운영의 목표로 한다. 건설법센터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6개 강좌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약 16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건설법센터는 그 외에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주요로법 건설법 전문변호사 초청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2011년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입학식 기념강연



김경환
서울대학교총장(전 법무부 장관)

1. 머리말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로이 150명의 영재들을 맞아들이는 정중실현 장님과 교수님들께도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을 대하니 제가 과거 검찰과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법조인 양성제도를 연구하고, 특히 재학년에 변호사시험법을 성안하여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일이 회상됩니다.

그리고 보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지도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내년이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찬반양론이 있었고, 지금도 각계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아직 판단하기가 좀 이른듯합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그 도입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거둬들여 가면서 문제점이 보완되어 잘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로스쿨 제도를 그러한 보완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은 주위의 관심과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대학들은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장래가 걸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분들이지만, 법학 이외의 다른 학문을 전공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분들은 로스쿨 3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는 다양한 전공분야를 가진 기초위에서 다양하고 성숙된 법률실무가를 양성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종래의 법과대학이 '법학

순혈주의'였다면 로스쿨은 "여러 학문의 혼혈주의"에 기초한 것이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법학 이외의 분야를 전공한 분들은 법학의 풍토를 더욱 새롭게 풍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입학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데 대하여 크나큰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힘든 학업과정과 장래 법률가로서의 삶에 대한 일말의 걱정과 불안감도 없지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벌이는 동료간의 경쟁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일생 기간 이처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3년으로 꼭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목표없이 행해지는 때는 결코 바라는 향구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TV의 '미스터 코리아' 같은 프로에서 보디빌딩을 통해 그야말로 힘차고 우람한 근육을 만든 사람들을 볼때마다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참으로 오랜 세월 힘들고 곤진한 연마 끝에 그토록 훌륭한 몸매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저 같은 빈약한 사람의 몸을 비교하여 보면 목표의 중요성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붙겠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법률가가 되려는 여러분들의 행태는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귀한 시간, 나만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 반드시 '미스터 코리아'와 같은 성취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2. 법학과 법률가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법학은 흔히 생각하듯

이 개념과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또 법률가는 개념과 논리만을 구사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법적개념과 법칙논리의 이해,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형성되는 리갈 마인드는 법률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법학의 목표는 그보다 한층 더 높은 곳에 있고, 법률가의 이상도 그러합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각자에게 그 것을 주는 불변의 의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법학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도는 법률조문이나 판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나 제도의 배후에 숨겨있는 정리가 무엇이며, 법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법학은 철학이나 인간학, 사회학 그 밖의 여러 학문으로부터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법학은 이웃과 사회와 국가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예정도 필요로 합니다. 법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갖가지 갈등과 희노애락이 용해되어 있는 인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 습니다.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마음가짐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신념입니다. 법률가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공정성과 정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수단이나 단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용기입니다. 법률가는 냉철하게 사고하여야 하지만 그 사고의 결론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에 내재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유악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균형감각입니다. 법률가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편파성과 일면성입니다. 특히 분쟁의 일방에서 서서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러한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률가는 이러한 편파성과 일면성을 최대한 극복하고 매사에 양쪽을 다 보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가의 신념과 용기와 균형각각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깊은 고뇌와 사색을 통하여 어렵게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법률가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항상 "원칙과 정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과 정도"는 때를바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중국 법가의 시조인 한비자는 법치의 원칙을 논하면서 "목수는 나무가 굵다고 하여 먹줄을 굵히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법의 집행은 지위고하와 부귀빈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관계없이 원칙과 정도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2300년전의 말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면 당장은 필박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큰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정도는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면 "역시 그렇게 하기를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드러나고 때로는 치명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본은 목목과 같은 분들에게, 목목을 심을 때 뿌리를 심지 못하면 그 나무는 꼭대기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수선시절부터 신념과 용기와 균형각각을 기르고, 또 원칙과 정도를 지킨다는 굳건한 자세를 기르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모든 법률가에게는 우리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땅에 법치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법치주의의 전통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든 그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든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풍요를 즐긴다 하더라도 법의 규범성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국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분열이 갈등을 법 보다는 힘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물리적 방법이 유효하면 법이 실망은 그만큼 줄어지고 법률가의 역할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채택한 불변의 국가 이념입니다. 국가의 정체성도, 경제제치 변명과 정치적 자유의 신장도 그 바탕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1, 20년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적지 않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손상은 도처에서, 또 여러 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가는 이처럼 손상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데 헌신하느라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고,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인간성할

다음으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인간성할'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헌법에 등장하는 용어 중 최고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에게 10조에 나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격변의 시대이며 질풍노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헌법의 모든 조항이 적·간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과연 이 헌법에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나누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등등이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30여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초임 시정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상의 최고 이념이라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사의 실제적 진실 발견 임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회가지라는 것을 내심으로 수긍하는데는 한참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젊은 시절의 저는 직업에 매몰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오류를 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러한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것은 법률가가 다루는 모든 업무의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코건 작진 법률가가 취급하는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에 특유한 인생의 문제가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가는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 문제 이상으로 그 사건의 배후에 깔려 있는 이러한 고달픈 인생의 문제를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가들은 일상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히 처리하는 일상의 사건들이 개개인의 당사자에게는 일생이 걸린 중대사건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기계적으로만 처리하거나, 그로 인해 얻을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소외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가는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자신이나 공동체가 누리는 혜택을 나누어 가지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지도도에 있는 사법들에게 지워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5. 법률가의 영역확대와 전문성 제고

다음으로 법률가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 제고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법조계는 그동안 엄격한 자격제도와 진입장벽이라는 보호하에 안주해 왔습니다. 소수의 법률가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은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법조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통적인 법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외국에 대한 법률시장의 개방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체질을 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법률가가 활동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소위 "법조산물"이라고 일컫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직역 이외에 사회의 다양한 여러 분야로 진출하여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학, 기업, 종교, 각종 이익단체나 기구 등등에도 활발히 진출해야 합니다. 그대야만 우리 법조계의 활로가 열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역대 44명의 대통령 중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무려 22명이나 되고, 상·하원의원, 대학 총장, 기업의 CEO 중 변호사 출신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하

는 법률가의 숫자가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18대 국회의원 중 변호사 출신이 56명으로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변호사도 2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기업의 인하우스 카운셀도 500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그중에는 그들의 정책 관리자가 되거나 계열회사의 CEO로 진출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범조인 수에 비하면 그러한 숫자는 아직도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숫자를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그 밖에도 법률가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스스로 찾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 경제적 요인이 크게 변화하고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법률의 영역 또한 날로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스쿨시기부터, 최소한 어느 한 특수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너럴리스트를 넘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외국의 법조인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소양을 길러야 합니다. 국내 법률시장의 전체 외형이 아직 미국이나 영국의 대형 로펌 하나의 매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속에 살아갈 것은 오늘날,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는 더 이상 국내법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세계 각국의 법률가들이 우리 법률시장을 공략해 올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법률가들도 국제적 분야에 눈을 돌리고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긴요합니다. 또 미국이나 서구는 물론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날이 성장하는 해외 법률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야 합니다.

뛰어난 외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될든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미 우리의 기업이나 체육인, 예술가, 학자들은 그 분야의 세계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법률가들이 이에 뒤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법률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 이외의 분야에 대한 풍부한 소양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종합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세계는 자금자족의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긴밀히 연관 되어 얹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어떤 대학의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과목 이외의 특수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이 거의 없어 강좌를 폐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물론 로스쿨 학생으로서의 변호사 시험 합격이 선결과제이고, 또 그 준비반으로 베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집을 줄여서라도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능력을 함께 길러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법이 오히려 국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법률가의 무능이나 게으름은 경우에 따라 사회의 해악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법률가의 품격과 윤리

끝으로 법률가의 품격과 윤리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어디인지 모르게 법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그 여운과 향기가 뒷날까지 오래 남습니다. 우리 사회는 법률가들에게서 그러한 정도의 품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가 사회에는 특유한 윤리가 있고, 그 윤리기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사소한 호르르짐도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가가 지탄을 받는 사회에서는 법치가 정작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법률가는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간에 단순한 직업인이기에 앞서 공익에 봉사하는 공인입니다. 법률가들이 받고 있는 존경과 특권은 그들이 사회에 대하여 베푸는 공인으로서의 봉사와 노력의 댓가일 뿐입니다.

예비 법조인 여러분들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품격과 윤리,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법률가는 공사생활 간에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소년의 표현처럼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울 수 있도록 침묵의 여과기에서 거르는 과정'이 필요함입니다.

사건관계인은 법률가의 말 한마디에 일회일비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순박한 국민은 그들의 말을 곧 바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의 말은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장만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전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법률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는 소외 이물이 아닙니다. 사건 관계자들은 항

시 많은 설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말은 정제되지 않고 장황하며 요령부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경청"은 법률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그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 중 하나로 "먼저 경청하라.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는 항목을 들었습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중요한 성공조건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7. 맺는말

지금 여러분은 막 출발선을 떠나려는 마라톤입니다. 달리다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한 힘든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급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좌절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안락한 일상에서는 발전의 동력이 생기기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발전과 도약은 대부분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사람이 패배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패배자로 남을 뿐입니다.

젊은 여러분은 한국 법조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지금의 젊음을 오래오래 간직하십시오.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과 불타는 열정이 있는 한 젊음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오늘 또 하나의 출발점에 서서 더 큰 꿈을 향해 힘껏 달려가십시오.

보람과 영광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지도자과정 제13기 수료식

최고지도자과정 제13기 수료식이 지난 2월 25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제13기 과정에서는 총 48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인석	서울특별시청 도모기획관	신원호	대한항공 상무
권장호	장수철강 대표이사	심장섭	법무법인 케이씨엘 구성원 변호사
김기영	수원지방법원 안전지원 부장판사	안상근	㈜파인원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김기웅	㈜한국글기세프뱅크 대표이사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김은종	㈜유비쿼 대표이사	우동혁	KBS 보도심의위원
김정식	순천향대학교 법과대학원 원장	유경희	유한콘크리트산업㈜ 대표이사
김중희	㈜경도 대표이사	이권재	법무법인 명문 대표 변호사
김택수	회계법인 세시대 대표이사	이동인	플룩스코브라㈜ 대표이사
김한수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이봉업	국군기무사령부 활동장
류환열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무이사	이장우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문종복	신한은행 부행장	이재경	㈜만경석사건설링 대표이사
박근희	㈜지오인티내셔널 대표이사/외장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기훈	민주당 국회의원	장명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국장
박동만	가가성형외과 원장	장석한	한국전력공사 처장
박명	한성기업㈜ 사장	장재권	대한유희공업㈜ 상무
박무석	서초세무서 서장	정인식	다이나믹관계개발마켓 전무
박소은	피에르 파브르 더모 코스메틱 지사장	조현순	솔로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윤정	㈜은피알앤드크리에이티브 대표	주정환	㈜정안교육 대표이사
박현동	국회 전문위원	전영복	㈜경인종합건설 대표이사
배은열	삼성테크윈 상무	최문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조교
부영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팀장	최인영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서영세	포스코 상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
석오철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황귀봉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부회장(제철사총괄)
손신익	코오롱글로벌 경영지원본부 부장	허승로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지식재산최고지도자과정(CIPO) 제1기 입학식



3월 7일 호암교수회관에서는,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Academy 제1기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의 강사진은 특허, 저작권, 상표,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외의 최고 IP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정상조 주임교수는 이번 강좌를 IP 현안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이론과 실무를 결합시킨 현실적인 과정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알렉산더 홀러바흐(Alexander Hollerbach) 교수 80세 기념세미나에 참석하여 대담집 Gespräche mit Alexander Hollerbach을 증정하였다.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인도 구자라트 국립법학대학교(Gujarat National Law University)에서 <동아시아법철학>(East Asian Jurisprudence)을 강의하였다. 3월 25일 한국인물전기학회에서 <인도인의 전기와 자서전>을 발표하였다.



김진식 교수

김진식 교수는 2월 8일 법무부가 구성한 상법(회사법)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성나인 교수

성나인 교수는 3월 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준 교수

2월 8일에는 법무부가 구성한 상법(회사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2월 11일에는 한국상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상사법 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송옥렬 교수 및 강원대학교 최봉희 교수와 함께 2010년 10월 법무부의 신주인수선택권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0년 12월 17일 신주인수선택권 가이드라인인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한기정 교수

한기정 교수는 2월 8일 법무부가 구성한 상법(보령법)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송옥렬 교수

송옥렬 교수는 2월 8일 법무부가 구성한 상법(회사법)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는 제30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9대 회장에 이어 연임하게 되었다.



안경환 교수

안경환 교수는 2월 22-24일 인도의 고아에서 열린 아시아 NGO네트워크(ANNI) 회의에서 Vinit Muntarbhorn (태국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Jirsa Gilani (파키스탄, 전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와 함께 고문으로 위촉되고, 3인을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김재형 교수

김재형 교수가 4월 25일 제48회 법의 날을 맞아 홍준근 정훈장을 수상했다.



석광현 교수

지난 3월 3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학회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된 시상식에서 석광현 교수가 제4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2010년 간행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박영사)이다.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심당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소장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국제거래법 분야 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국제거래의 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이다.



고학수 교수

고학수 교수는 한국법경제학회가 2011년 2월에 수여한 제3회 위공(吳公)법경제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노혁준 교수

노혁준 교수는 2월 8일 법무부가 구성한 상법(회사법)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Gesprache mit Alexander Hollerbach 최종고 교수 / 도서출판 관학

최종고 교수의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한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 행정법, 교회법 학자인 홀러바흐교수와 6시간에 걸친 대담을 녹취하여 발간한 책이다. 그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그가 1984년 한국을 방문하여 한독법학교류 100년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고 서울법대에서 강연한 예기가 언급되고 있다. 서울과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도 수록되어 이 책 자체가 한독법학교류의 중요한 문헌이 될 수 있다. 표지에는 저자가 그린 홀러바흐 교수의 초상화가 실려 있어 인상적이다.



신판태백선형법총론(제2판) 신동운 교수 / 경세원

신동운 교수의 <신판태백선형법총론>의 제2판이 간행되었다. 본 책은 저자가 위싱턴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연구생활을 할 당시 접하였던 판례교재를 모델로 하여 1995년에 간행하였던 <판례태백선형법총론>의 후속 저서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간행된 판례교재이다. 이번 판에서 저자는 초판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과 더불어 최근의 판례변화와 형법개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함으로써 형법판례교재로서의 적합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신형사소송법(제3판) 신동운 교수 / 법문사

제2판이 출간된 지 1년 만 만에 <신형사소송법> 제3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판에서 신동운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형사소송법에서의 특별법과 관례변화의 소개에 새로이 지면을 할애하였음은 물론 그간 학계의 연구성과를 축적해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본 책이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교육 및 실무에 있어서 교과서형 주석서(Lehkommentar)에 필적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제9판) 호윤희 교수 / 법문사

호윤희 교수의 <민사소송법> 제8판이 출간된 지 만 1년 만에 제9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판에서 어려운 법학과목인 민사소송법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과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풀어내고 있다.

이번 제9판에서는 2010년 추가된 새로운 판례들의 소개와 더불어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전자소송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과정과 관련된 논의를 보완함으로써 민사소송법 교재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적재산권법(제2판) 정상조, 박준석 교수 / 유문사

정상조 교수의 <지적재산권법> 제2판이 7년만에 간행되었다. 제2판 <지적재산권법>은 박준석 교수와의 공동 집필 산물로서 이론과 실무의 융합 그리고 50대와 40대 교수의 시너지 조화를 꾀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책은 지난 7년간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령과 관례에서 나타난 많은 변화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법학교육에 발맞추어 기존의 법학교육에서 진일보한 지적재산권법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교재의 저술에 고민하였던 필자들의 노력이 배어있는 결과물이다.



판례 법조윤리(각명덕기업 법조윤리 총서 1) 박준 교수 / 도서출판 소하

이 책은 각명덕기업의 지원을 받아 출간하는 법조윤리에 관한 기초 자료 축적 작업의 첫 결실이다. 변호사 윤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판례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법관윤리와 검사윤리에 관하여는 징계사례도 포함하였다. 군데군데 생각하여 불사항을 넣어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등 예비법조인 교육뿐 아니라 기존의 법조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과대학 / 법학연구소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종도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종도
2011-01-06	법무법인 율촌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3-22	한화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1-12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서	2011-03-22	한화증권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1-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3-28	법무법인 광장	5,000,000	법과대학	위임
2011-01-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03-28	법무법인 태평양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1-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3-28	전일호	1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1-28	보달	1,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3-28	최지석	1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1-31	법무법인 세종	3,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3-30	김·장 법률사무소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2-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3-31	보달	1,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2-14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서	2011-03-3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2-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2-25	대한상사중재원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납입액 기간합계 (11.01.01~11.03.31) 138,270,000				
2011-02-28	보달	1,000,000	법과대학	학술	납입액 연합계 (11.01.01~11.03.31) 138,270,000				
2011-02-28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02-28	최지석	1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3-03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법학발전재단				
2011-03-03	정순섭	7,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납입일	성명	납입액	기금종도	
2011-03-03	한화건설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2-11	법무법인 율촌	5,000,000	장학금	
2011-03-08	대한생명보험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2-11	(주)텐디	20,000,000	장학	
2011-03-08	한화캐리리어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3-16	한우북	1,000,000	학술	
2011-03-08	한화손해보험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3-18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0,000	학술	
2011-03-11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서	2011-03-18	조인석 (권사)와 10명	3,000,000	재정규제대응태출연용	
2011-03-14	한화엘앤씨(주)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3-19	홍성조	10,000,000	학술	
2011-03-17	한화씨유화학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납입액 기간합계 (11.01.01~11.03.31) 41,000,000				
2011-03-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납입액 연합계 (11.01.01~11.03.31) 41,000,000				